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2조(정의) (생략)</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1장 총칙</p> <p>제2조(정의 및 범위)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의 해외사무소는 그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규정에 따라 신고(보고)의 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이 진출한 국가의 법령에서 외국환 거래규정 제9-17조 해외사무소의 경우에도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경우</li> <li>2. 해당 금융회사 등의 업무에 대해 적용되는 국내 관련 법령에서 이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li> <li>3. 해당 해외사무소가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영업 활동을 위한 영업기금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li> </ol> <p>제2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 의제) ① 금융회사 등이 다음 각</p>

호의 법령에 따라 본 규정 제3조, 제4조, 제8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신고(보고)하는 경우, 그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3조, 제4조, 제8조에 따른 신고(보고)를 한 것으로 의제한다.

1. 「은행법」 제13조, 제47조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

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

3. 「보험업법」 제115조, 제117조, 제130조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

4.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 제18조

② 제1항에 따라 본 규정 신고(보고)의무를 의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신고(보고)시 본 규정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해외직접투자) ① 금융회사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제3조(역외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① 금융회사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경우 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고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 또는 미화 3,000만불(투자금 지급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투자금액을 포함한다) 이내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지급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이 설립한 현지법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고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1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사후보고할 수 있다.

1.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 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 미화 3,000만불(투자금 지급시점으로부터 동일투자대상에 대한 과거 1년간의 누적투자금액을 포함한다) 이내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지급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삭 제>

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이 영  
제8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외국법인(당해 현지법인의  
손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식 또  
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을 설립  
한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외국법인의 향후 3년간  
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  
산서

2. 당해 외국법인의 향후 3년간  
의 배당계획서

3. 당해 외국법인에의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동  
경비조달계획서

4. 당해 외국법인의 직전 사업  
연도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사회 의사록

③ 삭 제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사  
후 보고한 자가 해당 신고 또는  
보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④ (현행과 같음)

⑤ -----  
-----  
-----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변경(청산)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등이 현지법인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회사·손회사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하여 증자할 목적으로 현지법인금융기관에 지분투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⑥ ~ ⑧ (생 략)

제4조·제5조 (생 략)

제6조(보고서 등의 제출) ① 해외 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기일 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 금융회사등 또는 금

-----  
-----  
----- 다음 각 호의  
기간 내-----  
-----.  
-----  
-----  
-----  
-----  
-----.

1. 투자금의 회수·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의 청산 : 사유 발생한 후 3개월 이내
2. 그 외 변경시 :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제6조 (현행 제4조 및 제5조와 같음)

제7조(보고서 등의 제출)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각 호(단, 제4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적용을 제외한다.)의 1의 -----.





1. ~ 4. (생략)

③ 금융회사등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를 포함한다) 및 그 자회사, 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 지점(자회사·손회사) 설립 보고서를 투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를 한 자가 당해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금융회사를 청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 변경(청산)보고서를 변경(청산)사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역외집합투자기구 투자

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④ -----  
----- 보고를 -----  
-----  
-----  
-----  
-----  
-----  
-----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기일 내-----  
-----  
-----

시, 금융회사등의 투자금 변동 없이 발생한 지분을 변동의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면한다.

<신 설>

<신 설>

⑤ ~ ⑪ (생략)

제8조(해외지사 설치신고 등) ①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등이 해외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사 설치신고(수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1. 2. (생략)

②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등이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사 설치신고(수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1. 보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2. 청산하는 경우 : 청산사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8조(해외지사 설치신고 등) ① -----  
-----  
-----  
설치보고서-----  
----- 설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  
--.

1. 2. (현행과 같음)

② -----  
-----  
-----  
-----  
----- 설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

1. 2. (생략)

③ 금융회사등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 장의 해외지사 설치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심사를 생략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진출상대국과의 교섭, 신청 서류의 보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신고수리를 하거나 내신고수리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기간의 준비기간이 경과한 후에 본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

⑤ 감독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정할 수 있다.

⑥ 감독원장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신고나 보고받은 내용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사 설치

1. 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⑤ -----  
--- 보고-----  
-----.

⑥ -----  
--- 보고받-----  
-----.

⑦ (현행과 같음)

⑧ -----

와 관련하여 신고나 보고를 받은 감독원장은 신고나 보고내용을 매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해외지점의 영업기금)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지점의 설치신고수리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신고수리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영업기금을 당해 해외지점에 공급할 수 있으며, 외국환은행은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②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의한 영업기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해외사무소의 경비) ①

(생략)

② 금융회사등이 해외사무소의 확장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 관련하여 -----

----- 보고내용-----

-----.

제9조(해외지점의 영업기금) ① -

--- 설치보고를 한 금융회사등은 보고한 -----

② -----

----- 변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 보고-----.

제11조(해외사무소의 경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 보고-----.

③·④ (현행과 같음)

<p>제12조(해외지점의 영업활동 등)</p> <p>① 금융회사등의 <u>해외지점</u>은 당해 지점설치 국가의 법령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에 따라 신고한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12조(해외지점의 영업활동 등)</p> <p>① ----- <u>해외지점(제2조 제2항에 따른 해외사무소도 포함한다)</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	---